

대면투약관리료-약국 업무 관련 Q&A

Q1	'대면투약관리료' 와 기존 '투약안전관리료'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A1	<p>→ 그간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·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었으나, 2022.4.4.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까지 재택치료자 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, 재택치료자가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의약품 직접 수령이 허용되었습니다.</p> <p>→ 따라서 약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원외처방조제 시 ① 확진자 본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'대면투약관리료(6,020원)' 를, ②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의약품을 수령하는 경우는 '투약안전관리료(3,010원)' 를 산정합니다.</p> <p>※ '대면투약관리료' 와 '투약안전관리료' 는 동시 산정 불가</p>
Q2	'대면투약관리료' 는 언제부터 산정이 가능한가요?
A2	<p>→ 2022.4.4.일 진료 후 조제분부터 산정 가능합니다.</p> <p>※ 2022.4.4.일 이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확진 후 확진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급산정이 불가능합니다.</p>

Q3 '대면투약관리료' 산정 관련하여, 처방전에 별도 코드가 부여되나요?

A3

- 아닙니다. 처방전에 확진자 본인 직접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분자는 없으며, '대면투약관리료'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한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
- 현재 약국에 발행되는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드는 크게 'H/재택치료'와 'T/외래진료센터' 처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'H/재택치료'는 ① 재택치료자가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진료 후, 코로나19 관련 치료약제 처방 시 '조제시 참고사항'란에 기재되고 있으며, 또한 ②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양성판정 확진 후 의료기관에서 바로 코로나19 관련 약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처방전에 'H/재택치료'가 표시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'H/재택치료' 처방전의 경우 확진자가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,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음에 따라 약국에서는 확진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'대면투약관리료' 또는 '투약안전관리료'를 산정하여야 합니다.
 - ※ 다만, '대면투약관리료'는 2022.4.4.일자 조제분부터 적용가능
- 'T/외래진료센터' 처방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진료의 필요에 따라 외래진료센터 진료를 받고, 코로나19 관련 진료·처방 시 기재되는 코드입니다. 따라서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'T/외래진료센터'가 기재된 경우 약국 방문자가 확진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'대면투약관리료'를 산정합니다.

Q4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관련 이외 상병에 대한 진료로 발행된 처방전에 대해서도 '대면투약관리료' 를 산정할 수 있나요?

A4

- 기저질환 등 타상병 단독처방의 경우에도 확진자 본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'대면투약관리료' 를 산정합니다.
- '대면투약관리료' 는 코로나19 치료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,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조제함에 따른 수가입니다.
- 다만,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처방전 내 'T/외래진료센터' 가 표시되지 않으므로, 약국에서는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거나, 안내문(출입구, 접수대 등)을 부착하여 확진자 대상 처방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(예시) “코로나19 확진자 처방전 접수 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” / “코로나19 확진자 처방조제 시 ‘본인’ 또는 ‘대리인’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”

-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'코로나 관련 약제' 및 '타질환 관련 약제' 처방이 각각 발행된 경우, 약국에서 '대면투약관리료' 는 1회만 산정합니다.

Q5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족 등을 동반하여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 '대면투약관리료' 를 산정할 수 있나요?

A5

- 영유아, 어린이 등이 확진되어 외래진료 후 보호자가 동반하여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확진자와 보호자가 모두 약국에 방문시에는 '대면투약관리료' 를 산정하고, 보호자만 약국에 방문할때는 '투약안전관리료' 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.

Q6 '대면투약관리료' 산정 시 조제기록부 등에 확진자 방문에 대해 별도 기록이 필요한가요?

A6 → '투약안전관리료' 의 경우 조제기록부에 대리인수령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으나, '대면투약관리료' 산정 시 확진자 여부 확인에 대해 별도 기록사항 등은 없습니다. 다만,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'대면투약관리료' 와 '투약안전관리료' 산정 구분을 위해 '본인' 또는 '대리인' 을 선택하는 기능은 있을 수 있으나, 이는 수가 산정을 구분하기 위함이지 증빙을 위함은 아닙니다.
→ 다만, '대면투약관리료' , '투약안전관리료' 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확진 환자에 대한 조제 시, 확진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Q7 '대면투약관리료' 청구 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 제외대상인가요?

A7 →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. 다만, 심평원 시스템 반영등의 사유로 차등수는 2022.4.18.일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합니다.

Q8 청구프로그램 반영 시기와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
A8 → 정부의 재택치료자 의약품 대면 처방·조제 발표가 4.6(수)자로 발표됨에 따라, 세부 급여기준등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여 청구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며, 심평원 청구는 4.18일부터 가능합니다.
※ 프로그램 반영시기는 청구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(청구프로그램의 안내와 업체별 청구방법 등 매뉴얼 참조)